현행법

헌 법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라 칭하며 약칭 교협이라 한다.

제 2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뉴욕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한인 교회로 선교, 교육, 봉사, 연합 및 친교를 위한 협의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교회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항에 준한다.
제 1 항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서 목사 대표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은퇴 또는 70세 이상된 증경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제 2 항 신입 회원은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3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한다. (단 독립교회인 경우 가입신청서, 이력서, 안수증명서, 12회원교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단소속증명서와 3회원교

수정안

헌 법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이라 칭하며 약칭 교협이라 한다.

.....
1조) 뉴저지와 커네티컷이 뉴욕에서 분리되어 나가고 현재는 뉴욕지역교회들만 회원임.

.....

제 3 조(목적)
본 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진리를 수호하고(갈1:6-9)
2)교회를 보호하고(유1:18-21)
3)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
3조) 교협의 혁신을 위한 목표설정을 높이기 위해 기존교협의 가벼운 목표를 좀 더 높이고 구체와 함.

.....

제 2 장 회원 제 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뉴욕 지역 소재 한인교회로서 제 3조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종교법인 등록
제2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활동
제3항: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

제 5조(가입절차)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 4조의 자격

Scanned with CamScanner

회 추천서는 12회원교회 추천서로 대체한다.)
제 3 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 항 회원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리한다.

제 5 조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 헌법을 준수하고, 본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권리)
본회 회원은 권리는 아래와 같다.

제 1 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결의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신규 가입회원교회는 가입 당 해 년도 총회에서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을 갖춘 교회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항: 가입신청서, 종교법인 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 증명서(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제2항: 임원회에서 회원 가입서류를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한다.

.....

5조) 교협의 회원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종교법인체)이므로 사회의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당연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것임.

.....

제 6 조(의무)
본 회의 회원교회는 본 회의 헌법과 시행세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7 조(권리)
본 회의 회원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갖는다.
제1항: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총대)으로 파송하여 의결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항: 총대 외의 활동에는 한 교회에서 한명의 대표만 활동할 수 있다. (단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부서에는 임원회를 거쳐 2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으되 모든 의결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다.)
제3항: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항: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7조) 교협의 회원은 교회이지만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교회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가 참여함. 한편 은퇴한 증경 회장인 경우는 더 이상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회원자격이 없지만, 배려차원에서 총회에서의 언권은 주어짐.

.....

Scanned with CamScanner

제 8 조(징계)

회원 교회 및 교협활동에 참여하는 대표가운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2항: 헌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3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4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5항: 이단・사이비로 판명된 교회

제6항: 이단・사이비 사상 주장 및 사회적 범법행위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7항: 회원교회의 대표적 지위를 가진 목사가 개인적 일탈이나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자.

제8항: 본 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유언비어, 향응, 매표, 금품수수, 회비대납, 심각한 윤리 도덕적 결함 등이 있는 자.

제9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어기는 자.

.....

8조) 위의 여러 징계사유는 교협의 목적을 생각할 때 극히 상식에 준함.

.....

제 9 조 분할과 통폐합

제1항: 회원교회가 비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2항: 비회원교회가 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3항: 두 회원교회가 통합하여 제3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경우 두 교회는 회원권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 세워진 교회는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4항: 회원교회가 복수의 교회로 분리될 경우 분리 이전의 법적인 지위를 승계한 교회는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

.....

9조) 교회운영상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제 3 장 임원 및 위원

제 7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제 3 장 임원 및 위원

제 10 조 (임원)

Scanned with CamScanner

제 1 항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평신도 1인), 총무 1인, 수석협동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 인, 부회계 1인 으로 한다. 제 2 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로 한다.

제 8 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 1 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제 2 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3 항 총무는 본회와 각 분과(특별)위원회 사업을 관장하며 필요시 협동총무를 둘 수 있고 수석협동총무는 임원으로 협동총무단을 대표하고 총무의 업무를 돕는다.
제 4 항 서기는 모든 사무를 정리하며 부서기는 서기의 업무를 돕는다.
제 5 항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며 부회계는 회계의 업무를 돕는다.

제 9 조 (분과위원)
회장은 위원장을 임명하고 회기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분과를 증감할 수 있으며 각 분과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분과위원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 1 항 선교분과 : 연합예배, 국내 선교사업, 선교전략, 동포복음화 사업 운동을 전개한다.
제 2 항 교육분과 : 기독교교육, 평신도훈련, 각종 교육사업을 주관한다.
제 3 항 사회분과 : 한인사회와 한인지역 타 민족사회 등에 구제, 상담, 친목 등을 주관한다.
제 4 항 재정분과 : 재정정책수립 및 예산, 결산 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항 목회분과 : 회원교회의 목회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세미나, 목회 발전을 위한 회의 등을 주관한다.
제 6 항 홍보분과 : 본 회 회원 간의 정보교환, 교계동향소식, 연구발표, 기타 홍보를 주관한다.
제 7 항 음악분과 : 본 회의 연합성가, 음악발표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

제 11 조 (임무)

제5항: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내용을 정리하여 선임한 회계사에게 제출하고 공인된 재무제표를 총회에 보고한다, 부회계는 회계의 업무를 돕는다.

.....
제 16 조 (감사) 제5항 참조
.....

제 12 조(분과위원)

Scanned with CamScanner

제 8 항 체육분과 : 본 회의 산하 교역자 건강, 교회간의 친목,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제 9 항 여성분과 : 교회내의 여성운동과 가정 복음화, 직장여성 권익보호 등을 주관한다.
제 10 항 역사 및 자료분과 : 교협 역사편찬 및 보관, 교계 자료 조사, 수집을 주관한다.
제 11 항 국제분과 : 국제문제와 국제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항을 주관한다.
제 12 항 노인분과 : 노인문제 연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제 13 항 상담분과 : 회원교회 및 이민사회 가정문제를 상담하며 각종 문제해결을 주선한다.

제 14 항 미디어분과 : 미디어 관련 업무 및 본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 15 항 조선족분과 : 조선족들과의 유대와 협력을 주관한다.
제 16 항 장애인분과 :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각종 활동을 협력 및 주관한다.

제 10 조 (특별위원회)

회장은 위원장을 위촉하고 회기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증감 할 수 있으며 각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되 특별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 1 항 신학윤리위원회 : 본회 소속 교회 및 산하기관의 목사와 평신도의 자격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하며 교계 전반에 걸쳐 신학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계도하도록 한다.
제 2 항 청소년지도위원회 : 교협산하기관인 뉴욕청소년 센터의 운영에 관안 제반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항 출판위원회 : 본회의 출판업무를 관장한다.
제 4 항 지역협력위원회 : 지역 교회 협의회와 상호협력을 가지며, 지역 협의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연구 관장한다.
제 5 항 재산관리위원회 : 본 회의 재산, 등기서류, 임대, 보험유지를 관리하며 재산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모든 결정은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도 세칙을 두어 운영한다. (단,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6 항 법규위원회 : 헌법의 수정 및 개정과 기타 관

제 13 조 (특별위원회)
제 10항 징계위원회: 별도 운영세칙대로 시행한다.

.....

13조) 상벌위원회를 삭제한 이유는 이 조항이 생긴 이후 벌(징계)은 없고 상만 있어왔으며, 상을 받는 대상 선정의 객관성 결여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돌아가며 상을 주고받는 것에 식상해 함. (이 시대의 젊은 목사들이 교협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임)

.....

Scanned with CamScanner

련법규를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관장하다.
제 7 항 인권위원회 : 교계의 제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제 8 항 선거관리위원회 : 별도 업무 세칙을 갖고 본회의 임원선거와 각종 선거를 계획하고 광고하며 입후보 및 투표 등을 관리 운영한다.
제 9 항 교단협력위원회 : 각 교단의 협력을 강화해 본회의 활동을 공고히 한다.
제 10 항 상벌위원회 : 별도 운영세칙대로 시행한다.

제 11조 (임기)
본 회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2 조 (보선)
임원이나 분과위원장 및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충원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감사위원

제 13 조 (감사)
본 회의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감사위원을 둔다.

제 1 항 목사 2인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제 2 항 본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정 운영을 감사하고 회기의 사무국 재정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항 회기 인수인계시 동석한다.
제 4 항 감사는 자동 실행위원이 된다.

제 14 조(임기)
본 회 임원 및 실행위원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90일간 연장된다.

90일 연장기간은 선거관련 문제 발생 시에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간임

제 13 조(보선)

제 4 장 감사위원

제 16 조 (감사)
본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내부 감사위원회를 두고 외부 공인 회계사를 선임한다.
제1항: 내부 감사위원회는 목사 2인과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 본회의 수입과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무행정을 감사하고 회기의 전체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5항: 선임한 외부 공인회계사가 작정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검토하고 회개를 통하여 보고토록 한다.
제3항: 총회에서 선출된 새 회기 감사는 회기 인수인계시 동석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 감사는 자동 실행위원이 된다.

16) 숫자 맞추기 식의 회계는 많은 허점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내부 재무행정 감사를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또한 회계를 담당한 임원의 전문성 결여로 회개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공인 회계사의 재무제표로 회계보고를 대신하게 하려함임.

Scanned with CamScanner

제 5 장 교협산하기관

제 14 조 (뉴욕청소년센터)

뉴욕청소년센터는 유년 및 청소년의 복음화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교협의 산하기관으로 다음의 기본사항을 준수한다.

제 1 항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 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3년마다 교협실행위원회를 거쳐 본회 정기총회

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제 3 항 뉴욕청소년센터 대표(사무총장)는 자동 실행위원이 된다.

제 4 항 산하기관의 모든 재산은 제10조 5항의 원칙에 따른다.

제 15 조 (이단・사이비 대책 협의회)

신학과 이단・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 1 항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제 2 항 별도세칙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제 3 항 협의회장은 자동 실행위원이 된다.

제 16 조 (영어권 목회자 협의회)

영어권(EM)목회자 협의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별도세칙을 두어 관련된 업무를 관리 시행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제 1 항 영어권목회자 협의회의 회장은 자동 실행위원이 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 17 조 (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 회장 및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요청 시 자문에 응한다.

제 1 항 본 회의 필요 시 관계 전문분야의 특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직 원

제 18 조 (직원)

본 회의 업무증진을 위하여 사무를 취급하는 유급 직원(풀타임,파트타임)을 둘 수 있으며, 채용에 대한 규정은

별도 사무국 세칙을 적용하고, 직원채용 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8 장 이사회

제 19 조 (구성)

제 1 항 이사회는 각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들과 이사장단과 본 회의 임원이 추천한 평신도 이사로 구성한다.
제 2 항 이사장은 본 회 총회의 자동 총대가 된다.

제 20 조 (임원 및 회의)

제 1 항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2 항 정기 이사회는 년 2회로 모이며, 정기 총회는 10월 중에 열도록 한다.

제 21조 (기능)

Scanned with CamScanner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 1 항 임·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서를 심의, 인준한다.

제 2 항 예산에 따르는 재정을 지원한다.

제 3 항 재산 관리 및 본 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제 9 장 실행위원회

제 22조 (구성)

본 회 실행위원회는 본회임원, 협동총무, 감사, 각분과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협산하기관과 교협 협력기관

및 단체의 회장(대표)으로 구성한다.

제 1 항 실행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서기, 회계는 자동으로 실행위원회 임원이 된다.
제 2 항 실행위원회는 본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회무를 수행한다.

제 10 장 회 의

제 23 조 (회의)

본 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 1 항 정기총회 :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며, 임원개선, 사업계획, 예·결산보고, 교협 이사 인준, 교협 이사회 정관 인준, 헌법 개정을 하며 총회공고는 1개월 전에 하고 개회 성원은 회계의 회비 납부 확인과 서기의 호명 확인을 받은 파송된 대의원 수로 하며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회집된 대로 개회한다.
제 2 항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실행위원회 결의나 회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되 2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 3 항 실행위원회 : 정기 실행위원회는 연 4회, 임시

Scanned with CamScanner

실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4 항 임원회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5 항 특별위원회 : 각 특별위원회별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11 장 선거 및 자격

제 24 조 (선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 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유효표의 최다점자로 한다.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 2 항 정 · 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석위원의 과반수 특표로 선출한다.
제 3 항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제 4 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제 5 항 기타 임원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 6 항 각 분과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각각 임명 및 위촉한다.
제 7 항 감사 3인 중 목사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제 8 항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법조항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 시행세칙을 정하여 검증된 후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제 25 조 (자격)

본 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제 2 항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제 3 항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제 4 항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 5 항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 6 항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 한다.
제 7 항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8 항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제 9 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제 10 항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제 11 항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제 12 장 재 정

제 26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모든 헌금과 회원의 회비, 찬조금, 이사회 후원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재정감사를 위해 편의상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며 회기 내 임기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 28 조 (인수인계)

인수인계는 총회 후 15일 이내에 신구임원 및 감사의 입회하에 하며 전 회기의 자료 및 재정 관련 서류를 인수인계한다.

제 13 장 부 칙

제 29 조 (개정)

본 회의 헌법 개정은 실행위원회 제의나 회원의 1/4이상의 제의로 총회(정기,임시)에 상정하여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한다.

Scanned with CamScanner

제 30 조 (문서발송)
본 회의 문서발송 시 이메일을 공식문서로 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을시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 31 조 (운영세칙)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제 32 조
본 헌법의 미비 된 사항은 만국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 33 조
본 헌법은 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헌 법

1차 수정통과: 1988년 10월 31일

2차 수정통과: 1989년 10월 31일

3차 수정통과: 1993년 10월 25일

4차 수정통과: 1996년 10월 21일

5차 수정통과: 1997년 10월 20일

6차 수정통과: 2005년 10월 20일

7차 수정통과: 2007년 10월 22일

8차 수정통과: 2009년 10월 19일

9차 수정통과: 2010년 10월 12일

10차 수정통과: 2012년 8월 27일

11차 수정통과: 2014년 10월 27일

Scanned with CamScanner